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
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
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

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33호로 2024년 11월 8일 이규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대행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,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사무처리 등(안 제3조)

다. 경비 지원(안 제4조)

라.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(안 제5조)

마.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
바. 행정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(안 제8조 및 제9조)

사. 표창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11.11.~2024.11.16./5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(지역회의 등)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”라 한다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회의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운영과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에서는 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4조(경비의 지원)~안 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에서는 협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지원신청과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안건은 협의회에 그동안 상위법령인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9조(사무기구), 제29조(지역회의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에 따라 지원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,
- 현재, 협의회의 구성과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※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일반현황

□ 총괄 현황

위원 수	위 축 구 분				성 별		지회별	
	직능 대표	지역대표(시·구의원)			남	여	1지회	2지회
		소계	광역	기초				
200명	180 (90%)	20 (10%)	3	17	129 (65%)	71 (35%)	104 (52%)	96 (48%)

□ 예산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사무처 지원액			대행기관 지원액			비 고
		소계	사업비	운영비	소계	사업비	운영비	
2020년	64,889	29,889	22,100	7,789	35,000	35,000	-	
2021년	36,635	11,635	3,750	7,885	25,000	25,000	-	
2022년	71,407	36,407	28,271	8,136	35,000	35,000	-	
2023년	71,402	36,402	28,266	8,136	35,000	35,000	-	

*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지원 예산: 45,000천원

- 우선, 입안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,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1)에서 자치구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)에서 지역회의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, 표창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.

- 아울러,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

1) 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2) 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제9조(사무기구)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(이하 “사무처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10. 5. 20.>

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,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
2.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29조(지역회의 등)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, 시·군·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2.>

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

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30.>

[전문개정 2012. 2. 29.]